

2019학년도 1학년 학생건강검진 병원선정 심의

안전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9.04.09.

제안자 : 학교장

제안설명자 : 생활안전부장

1. 실시기준 및 세부지침

- 학교장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「초중등교육법」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운위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선정
-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건강검사 불허

2. 세부사항

- 가. 건강검진의 시기 : 2019년 4월 ~ 6월(1학기 중)
- 나. 건강검진의 방법 : 학생(보호자)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
- 다. 검진기관의 선정
- 1) 대 상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
 - 2) 검진기관수 :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
 - 3) 선정 방법 :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
- 라. 검진결과 통보방법
- 마. 문진표 제공방법 : 가정통신문(각 반 담임선생님 배부 후 개인별 작성)
- 바. 구강검진기관 유무 및 별도선정 방법

3. 검진 의료 기관 비교

검진기관명	소재지	비 고
강동서울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(T:488-1190, 1195)	지하철 5호선 강동역 2번출구(길동사거리방향 100M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 • 치과 있음 • 검진시간 : 평 일 14:00~17:00 토요일 09:00~12:00
강동내과검진센터 (T:482-1064)	지하철 5호선 천호역 8번출구(도보 2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 • 로템치과 연계되어 있음 • 검진시간 : 평 일 14:00~17:00 토요일 09:00~12:00

4. 건강검진비용 : 전액 학교부담 (10,103,900원)

- 일반학생 : 22,610(원) * 370(명) = 8,365,700원
- 비만학생 : 28,970(원) * 60(명) = 1,738,200원